

『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어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과 성과향상을 지원하고자 함.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10조)
-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
-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(안 제7조)
-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)
-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 출석 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은
 -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및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두는 전부개정안으로,
 - 노사민정협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

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되나,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 중재 및 갈등해소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 인건비 등 연간 예산 1억원이 소요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